

「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이은미 의원
- 제안일자 : 2024. 5. 3.
- 회부일자 : 2024. 5. 17.
- 상정일자 : 2024. 5. 17.

2. 제안이유

-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정책 마련 필요에 따라 우리 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군수와 사용자의 책무(안 제3조 ~ 안 제4조)
- 시행계획 수립(안 제5조)
- 실태조사(안 제6조)
-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(안 제7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 제3조에서 ‘지자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’ 고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우리 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6조(실태조사 등)에서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.
- 안 제7조(지원사업)에서는 관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을 명시함.

<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사업 >

1. 법 제10조에 따른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
2.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
3.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
4.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사업
5. 여성의 취업 및 일·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사업
6. 그 밖에 군수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- 안 제8조(업무의 위탁)에서는 지원사업에 따른 업무를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을 제고하고 경제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입법 취지가 인정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제정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.